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8. 20 선고 2024가단5536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33,324,526원 및 그 중 130,505,790원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22. 12. 29. 원고와 PC 86세트에 대한 시설대여약정을 체결하면서 2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자율 연 13.5%, 연체이자율 연 16.5%로 정하여 30개월 동안 매월 8일 리스료(원리금) 8,049,74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약정서에 첨부된 약관 제20조 제2항 제1호는 C이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원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 3 영업일 전까지 지체 사실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C은 2024. 2. 8.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4. 2. 27. C에게 2024. 3. 8.까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2024. 3. 9.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는데, C은 2024. 3. 8.까지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2024. 3. 20.을 기준으로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원리금 합계는 133,324,526원(= 원금 130,505,790원 + 이자 2,655,074원 + 연체이자 163,66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33,324,526원 및 그 중 원금 130,505,790원에 대하여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 C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는데, 그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변제받게 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C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C의 채권자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연대보증인에게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